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역별 중앙회 등의 수수료 징수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42호,
제12843호, 제12844호, 제12849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II . 주요 내용별 검토	6
1. 각 중앙회 등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2. 각 중앙회 등의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및 사용	18

I. 개요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30조 및 제85조).

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간호사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4조).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 네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등의 면허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 및 보수교육을 수행하는 각 중앙회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공통된 내용을 담기 위하여 대상 직역의 소관 법률에 따라 각각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합하여 검토하기로 함.

1. 각 중앙회 등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들은 각 직역별 보수교육·연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u>	
제30조(협조 의무) ① (생략)	제30조(협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 -----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③ (생략)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 ⑧ (생략)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연수교육) ① (생략) <신설>	제15조(연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연수교육, 제2항의 개인정보 제공-----.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료기사협회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제2000-18호)에 따른 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 >

의료기사등	교육기관
임상병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	대한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	대한안경사협회

- 한편,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약사법」에서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간호조무사협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사업자는 3년 주기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며, 2023~2025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약사법 시행령」에서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약사회 및 한약
사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함⁴⁾.

- 의료인, 의료기사 및 약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보수교육에서
면제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음.⁵⁾

4) 「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

5)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 따라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각 중앙회 및 협회 등은 대상자 파악 및 교육 안내 등 보수교육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의료법」, 「간호법」 및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등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므로, 보수교육의 대상은

는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
3.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4. 대학원 재학생
5.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6.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7.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청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약사·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두 각 중앙회의 회원으로 일견 각 중앙회가 소속 회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법률상 당연가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미등록회원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음.

- 또한, 의료기사등과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업무는 현재 각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면서도 보건복지부는 교육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개정안은 제공할 수 있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을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네 개정안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6)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18조는 제1항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하면서, 제2항

-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로 나열하고 있음.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성이 있는 각호는 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2가지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특정 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도록 할 경우, 이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생각건대, 동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 제1호에 따라 제공할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7)

7) 입법례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제37조(조사, 보고 등) ④ 제1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그가 관리·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보수교육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각 중앙회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수용함. 다만, 하위법령에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간호조무사도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음.
-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개별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라는 인용조항 없이도 가능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 등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대한간호협회 (찬성)

-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중앙회의 면허신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개정법률안에 찬성함.
- ☐ 다만, 입법기술상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성이 있음.

4) 대한약사회 (찬성)

- ☐ 정부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여 교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동의함.
- ☐ 다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을 수정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음.

5) 대한한약사회 (찬성)

- ☐ 연수교육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약사 연수교육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6)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찬성)

- ☐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필요함.

7)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찬성)

- ☐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대상자 정보가 수탁기관에 원활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8)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찬성)

- ☐ 개정안은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교육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수교육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판단됨.

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찬성)

- ☐ 별도의견 없음.

10)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찬성)

- ☐ 별도의견 없음.

2. 각 중양회 등의 신고 수리 수수료 징수 및 사용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들은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양회 및 관련 기관 등이 해당 수수료를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u>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u>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 ----- ----- <u>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u> ,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u>재교부받</u>	제44조(수수료) ① ----- ----- ----- <u>재교부받으</u>

<u>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u> ② (생 략) <u><신 설></u>	<u>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u>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u>	
제8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등록·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u><신 설></u> 2. ~ 7.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제82조(수수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u>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u>
<u><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u>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제27조(수수료) ①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제28조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사 및 약사 등은 3년마다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⁸⁾

- 8)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각 법률에서 이러한 신고의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신고 수리 업무를 각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약사법」

제7조(약사·한약사 신고)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9)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시행령」 제12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취업실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업무

-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중양회는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각 중양회별 최근 3년간 신고 수리 현황 >

(단위: 명)

- 대한의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38,046	26,342	51,214	115,602
- 대한치과의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10,974	4,138	9,863	24,975
- 대한한 의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9,257	2,420	5,299	16,976
- 대한조산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140	60	58	258
- 대한간호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69,998	90,044	109,782	269,824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4,738	2,371	15,317	22,426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5,310	5,242	13,938	24,490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2,909	2,728	5,121	10,758
- 대한방사선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6,632명	3,556명	10,273명	20,461명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619	707	1,179	2,505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2,017	2,603	12,139	16,759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1,160명	1,318명	1,834명	4,312
- 대한안경사협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2,260	707	2,416	5,383
- 대한약사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25,575	2,028	26,586	54,189
- 대한한약사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고자수	997	53	727	1,777

자료: 보건복지부

□ 각 중앙회에 따르면 이러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등 평균 연 2억 2,321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신고 수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

□ 개정안은 이처럼 각 중앙회가 수탁받은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고 수리 업무는 각 법령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에 위탁한 사업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소요되는 비용을 각 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각 중앙회의 신고 수리 업무 소요 비용(2024년 기준) >

(단위: 천원)

	총액	인건비	운영비	비고
의사협회	730,800	621,000	109,800	면허신고 등 6명 콜센터 3명
치과의사협회	130,000	75,000	55,000	전담인력 1.5명
한의사협회	224,523	38,000	186,523	총무비서팀 3명
조산사협회	31,400	30,000	1,400	전담인력 1명
간호협회	261,000	200,000	61,000	상시근로자 3.77명 단시간근로자 1.5명
임상병리사협회	403,258	194,045	209,213	담당직원 3명 신고주간콜센터운영
물리치료사협회	172,407	96,000	76,407	담당직원 3명
작업치료사협회	122,733	66,613	56,120	담당직원 3명
방사선사협회	63,000	39,000	24,000	담당직원 2명
치과기공사협회	66,500	35,500	31,000	전담직원 1명
치과위생사협회	222,522	135,730	86,791	상시직원 1명 일용직원 2명
보건의료 정보관리사협회	57,995	45,100	12,895	
안경사협회	162,400	124,000	38,400	담당직원 4명
대한약사회	345,712	124,653	221,059	
대한한약사회	40,571	14,732	25,839	
평균	202,321			

자료: 보건복지부, 각 중앙회

□ 다만, 그 비용을 신고에 대한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여 신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의료인의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조항은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된 당시부터 존재해온 조항으로,¹⁰⁾

10) 구(舊)「의료법」[시행 1962.3.20.] [법률 제1035호, 1962.3.20., 전부개정]

제17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의 등록대장을 비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호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실태 관리는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전제가 됨.¹¹⁾

즉,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는 의료인 등의 공급을 파악하고 신고 과정에서 보수교육 이수 확인을 통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 각 법률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¹²⁾

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면허증을 교부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④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오성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2019

12) 「의료법」

제25조(신고)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은 이러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 법률에서 부과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수범자의 지위에 있음. 헌법재판소도 2014년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고조항은 보건의료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수립을 통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의료인에게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¹³⁾

□ 그런데 국민(의료인 등)에게 국가 정책 목적상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행정기본법」 제35조¹⁴⁾에서는 행정청이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의 신고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 따라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등의 신고 수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가 민간 위탁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각 법률에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헌법재판소결정 2014.6.26. 2012헌마660

14) 「행정기본법」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면허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면허 발급이 아닌 면허 신고 행위에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또한, 각 협회비, 보수교육비에 신고수수료까지 부과할 경우 추가 비용 납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신고 기피 현상이 우려됨.

2) 법제처 (신중검토)

-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서비스를 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면허증 발급 및 국가시험 시행이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규정된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경우는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일 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마찬가지로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그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입법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수수료 납부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3) 대한간호협회 (찬성)

- ☐ 신고대상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본 개정법률안에 찬성함.
- ☐ 다만, 중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이를 이중부담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신고 대상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4) 대한약사회 (찬성)

- ☐ 면허신고와 관련하여 수탁단체가 수수료를 받아 신고업무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해 적극 찬성함.

5) 대한한약사회 (찬성)

- ☐ 별도의견 없음.

6)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찬성)

- ☐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 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봄.

7)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찬성)

- ☐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인력과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8)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찬성)

- ☐ 현행법상 의료기사의 면허 실태 신고 수리 업무가 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력·시스템운영비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상 어려움이 있었음.
- ☐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면허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판단됨.

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찬성)

- ☐ 별도의견 없음.

10)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찬성)

- ☐ 별도의견 없음.

11) 충청북도 진천군 (반대)

- 간호사 면허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국가행정편의를 위한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직업권 침해, 형평성 문제, 공공성 훼손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개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기보다는 국가 재정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4